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11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에 따라 귀하(귀사)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, 명단 공표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‘수취인 불명’의 사유로 반송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[별지 제1호서식]

(앞 쪽)

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에 따라 귀하(귀사)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상습체불 건설사업자 인적사항	성명 및 상호 (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대지건설산업(주) 김○영	나 이 (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이)	만 59 세
	주소 (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)	법인의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동오4길 11-17 대표자의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○○○, ○○○호		
공표 내용		<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3년간 상습체불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> ○ 처분이력 : 시정명령(2022.02.16.)		

	○ 체불대금내역 : 대지건설산업(주)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"하남 우체국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"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80,960천원을 체불하였음 ○ 처분이력 : 영업정지(2022.04.18.) ○ 체불대금내역 : 대지건설산업(주)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한 "하남 우체국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"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80,960천원을 체불하였음 ○ 처분이력 : 영업정지(2022.06.08.) ○ 체불대금내역 : 대지건설산업(주)는 민간에서 발주한 "경기도 시흥시 장현 메디컬 아레테 신축공사"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19,665천원을 체불하였음 - 이하 여백 -
공표 예정일	2023년 11월
공표 방법	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에 게재
소명 기한	2023년 11월 10일

만약 귀하(귀사)께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(뒷면 참조)에 해당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위 예고내용이 공표됩니다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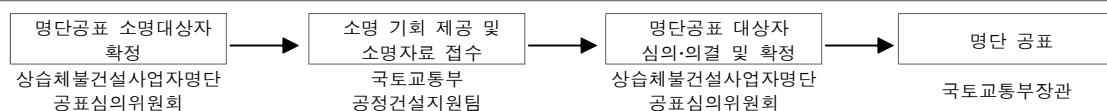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※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정건설지원팀 담당자 임희철(전화: 044-201-3578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관련 조문

- **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(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(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,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)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 대금,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^{*}인 자(이하 "상습체불건설사업자"라 한다)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,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 (편집자 註) '22.1.28.부터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(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)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체불 총액 '1천만원 이상'으로 하고,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총액에 추가하여 적용('22.1.28. 이전은 '3천만원 이상'을 적용)
-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**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(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)**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"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,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(이하 "상습체불건설사업자"라 한다)가 사망한 경우
 2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「민법」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3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
 4.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- **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4(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)**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실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·나이·상호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·나이·주소 및 법인의 명칭·주소를 말한다)
 2.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

처리절차



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

본인(법인)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,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일 :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1. 대상자 인적사항

대표이사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)			
건설업체	상호		법인번호 (사업자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)			

2. 소명사유 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2조의3 해당 여부)

구 분	해당여부 (O,X)	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
① 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·실종신고 (영 제1호, 제2호)		-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②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액을 전액 지급(영 제3호)		- 체불 및 청산내역(3항 참조) - 체불 청산 증빙자료(입금증, 통장사본, 상대방 확인서(인감 증명서 포함), 배당표, 판결문 등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)
③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,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(영 제4호)		- 체불 및 청산내역(3항 참조) -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(붙임1 참조) - 자금조달 방안(붙임2 참조) -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(입금증, 통장사본, 상대방 확인서(인감 증명서 포함), 배당표, 판결문 등 체불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)
④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(영 제5호)		-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파산선고문

3.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(2-② 전액 청산,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

연번	체 불 상대자	체 불 액	청 산 액	잔 액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
※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

4. 청산계획서(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 : <붙임 1> 참조

5. 자금조달 방안(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) : <붙임 2> 참조

6. 제출 증빙(붙임) 자료 목록

연번	증빙자료 제목	비 고
1		
2		
3		
4		
5		

※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

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 하

<붙임1> ※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

청산 계획서(예시)

수신인

기관명 : 국토교통부장관

제출인

이름 :

주소 :

본인(법인)은 기준일 현재 총 ()회의 체불액 ()원 중 ()회에 대하여 ()원을 지급하고 체불액 ()원을 미지급하였으며,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산할 계획입니다.

☐ 지급계획

- 김○○ : 0000. 00. 00.까지 전액 지급

- 박○○ : 0000. 00. 00.까지 전액 지급

위 지급계획에 따라 체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, 미지급 시 추후 명단 공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,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제출일 : . . .

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<붙임2> ※ 2-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

자금 조달 방안

제출인	성명 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	
자기 자금 (단위: 원)	① 금융기관 예금액		② 부동산매도액	
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		④ 현금 등 기타	
	⑤ 소계			
차입금 등 (단위: 원)	⑥ 금융기관 대출액		⑦ 사채	
	⑧ 기타		⑨ 소계	
⑩ 합계(원)				
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제출인 : (서명 또는 인)				